

##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2. 2. .  
제출자 : 이천시장

### □ 개정이유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내용 보완 및 인용법령의 개정·삭제로 일부 시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려 함

### □ 주요골자

가. 인용조문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문 정리 (안 제5조)

- (가) 당초 : 음성나환자집단촌  
(나) 변경 : 한센정착농원

나.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등록문화재로 관리토록 함에 따라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안 제10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0%경감

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로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3조)

이천시조례 제 호

##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중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한다  
제10조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제13조중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무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박순자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세담당 한영옥
	담당자 성명·전화	한영옥 (644-2188)

## 신·구 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한세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세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세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p> <p>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p> <p>&lt;신 설&gt;</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p>

